

행사장경호 운용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철* · 김태민**

<목 차>

- I. 서론
- II. 민간경호의 이론적 배경
- III. 행사장경호 사고사례 분석
- IV. 행사장 경호 운용 시스템
- V. 결론 및 제언

<요 약>

행사장은 다중이 운집되어 있는 특수한 경호대상지역으로서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총체적이고 통합적 경호 운용시스템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생한 상주'가요콘서트'행사장사고는 민간경호업체의 전문성은 물론 종합적 안전관리체제의 미비, 전문 안전요원 배치기준 미비,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 부재, 안전조치 부재 등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산재되어 있는 국내 행사장경호에 관한 법적·제도적, 정책적, 운용적인 부문별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었으며, 본 연구를 수행하기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택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행사장경호 운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정책적 개선방안, 운용적 개선방안이라는 세 가지 범주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경비업법의 개정 사안, 공연법 등 행사장 경호와 관련된 관련법령의 개정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책적 개선방안으로는 '시큐리티기획사'제도의 도입과 '경비지도사'제도의 강화, 관계기관의 기능 확대와 상호협력체계 구축, 수익성행사의 민영화, 민간경호에 대한 의식의 제고, 시큐리티 박람회 및 세미나의 확대에 대해 논의하였다. 운용적 개선방안으로는 시큐리티컨설팅 기법, CPTED 기법의 적용, 시스템 통합 기법, 경호운용 기법 등의 전문 시큐리티 기법의 적용, 공경호와 자원봉사자의 지원시스템 마련, 표준 '경호업무매뉴얼'마련, 장비의 현대화·첨단화, 산·학·관이 참여하는 경호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경호, 민간경호, 행사장경호, 민간경호산업, 경호업체, 운용시스템】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이학박사 (제1저자)

** 경운대학교 경호학부 교수, 경호학박사 (제1공동저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내 스포츠경기 및 문화행사와 같은 민간주최행사의 안전관리책임은 행사주최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최측과 시민들의 안전의식 부족과 수익성에 비례하는 비용부담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경찰의 경비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이 행사장경호와 같은 혼잡경호서비스에 자주 동원되면 본연의 임무인 수사·방법·교통·정보와 같은 치안서비스에 경찰역량을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경찰청, 2003).

다종의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시 민간경호에 일임하여 위탁관리하게 하는 체계는 이미 선진 각국에서 일반화된 현상이다. 특히 프로축구, 프로야구 등의 프로스포츠 경기대회와 같은 수익성 경기행사와 마라톤경기대회, 대규모 국제경기대회, 박람회, 전시회 등에서도 민간경호업체에 안전관리의 임무를 주어 효율적 행사진행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 혼잡경호와 같은 경호활동영역의 민영화는 공경호의 경호업무 및 치안활동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민간경호산업의 육성을 위하여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실제로 2002 한·일 월드컵축구대회를 공동주최한 일본의 민간경호업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던 경호산업의 저력에 힘입어, 일본경찰과 함께 경기장 시설관리를 비롯한 각종 안전관리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바,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월드컵축구대회 행사를 치르기도 행사장 경호업무를 민간경호원들을 활용한 일본은 경호업무와 관련된 비용 전액을 월드컵조직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반면, 한국은 공무원 신분인 경찰 또는 전투경찰이 경비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경호업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국제축구협회(FIFA)로부터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국가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이윤근, 2004).

한국의 공경호 업무가 민간경호영역으로의 이양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민간경호의 비전문화에 따른 질적 수준이 낮은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선진국에서도 그러하듯이 국내에서도 이제 이러한 행사장 등의 안전활동은 공경호에서 민간경호영역으로의 이양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물론 그것은 민간경호의 질적 향상 및 전문화가 전제된다. 현재 민간경호의 전문성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2005년 10월 3일)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MBC가요콘서트' 행사장 사고는 11명이 사망하고 수십여 명이 다치는 등 유례없는 행사장경호 사고사례로 기록된 바와 같이, 이러한 상주참사와 관련하여 앞으로 개척되는 각종 행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행사에 참가하여 즐길 수 있도록 행사장경호에 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고도의 전문성과 총체적이고 통합적 경호 운용시스템이 요구되는 대형 행사장경호를 중심으로, 행사

장경호 운용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최근의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산재되어 있는 국내 행사장경호에 관한 법적·제도적, 정책적, 운용적인 부문별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기본적으로는 관련 문헌자료 조사하였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간경호 관계기관 및 민간경호업체 실무자 대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참고하였으며, 행사장경호 운용시스템에 관한 사고사례 조사의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 삼각도구화방법을 채택하였다.

문헌자료 조사는 본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행본, 학위 논문, 연구보고서, 인터넷상의 각종 정보들을 활용하였다. 연구물과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대학 도서관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확보하였고 정부기관 및 사회기관 등 유관기관의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경찰백서, 범죄백서 등과 같은 경찰청 자료를 확보하고, 주요 관계기관 및 민간경호업체의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은 물론 직접 방문을 통해 통계자료 및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민간경호 관계기관 및 민간경호업체 실무자 대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직접적 기술은 하지 않았으며, 행사장경호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최근의 사고를 선정하여 질적 사례연구¹⁾를 수행하였는데 이것은 본 연구에 매우 적합한 연구 전략이라 할 수 있다.

II. 민간경호의 이론적 배경

1. 민간경호의 의의

실질적 의미에서 경호 개념은 학문적 측면에서의 접근한 개념으로 경호란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경호대상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직·간접적인 위해 및 위협 요인을 사전에 방지 및 제거함은 물론 근접에서 경호대상자의 신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형식적 의미에서 경호 개념은 현실적인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하여 정립된 개념으로 대통령 경호실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경호”라 함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1) 질적 사례 연구는 하나의 보기, 현상 혹은 사회적 단위에 대한 철저하고 총체적인 서술과 분석이다(허미화 역, 1997). 사례 연구를 질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연구의 목적이 가설을 검증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안전활동을 말한다.

한국 민간경호의 법적근거는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경비업법 제2조(정의)에서는 “경비업”을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76년 제정당시 ‘용역경비업법’이라는 법명은 경비업법의 태생적인 한계²⁾에 의해 경호와 경비의 명확한 개념 구분 없이 일본 경비업법을 모델로 자연스럽게 경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용역경비업법’이란 용어로 제정이 되었다. 또한 학계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서적, 연구물 등지에서 ‘Private Security’ 용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경비업법을 토대로 ‘민간경비’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현재 민간경비라는 용어를 다수 사용하기에 이르고 있다.

‘경호’와 ‘경비’의 용어사용에 관해 보편적 인식의 개념에서 접근하자면 관련업계에서는 신변보호활동 및 호위적 성격이 주(主)가 되는 업무수행활동을 ‘경호’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고³⁾, 경호대상자의 생명 또는 재산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특정한 시설 및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활동을 ‘경비’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 인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민간경호의 개념을 학문적인 측면과 보편적 인식의 측면을 고려하여 민간경호의 개념을 개념적으로 정의(Conceptual Definition)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민간경호란 개인 또는 기업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특정한 의뢰자인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해와 위험요소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특정한 시설 및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제반 안전서비스 활동인 것이다.

2. 민간경호의 분류

한국의 민간경호는 근거법인 경비업법에 의해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경비업법상의 분류이고,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민간경호의 분류는 민간경호의 특성상 의뢰인의 보수에 따라 경호의 수준을 각기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경호의 성격, 경호대상 지역 및 장소, 경호대상자의 특성, 경호대상자의 지위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류될 수가 있다.

국내 주요 경호회사의 경호 분류를 분석해 보면 ‘ST’社は 개인신변보호, 호송 및 경호, 이벤트 및 행사경호로 분류하고 있다. ‘KT’社は 크게 신변보호, VIP의전 및 수행경호, 행사·이벤트·스포츠경호로 분류를 하고 있다.

2) 한국의 경비업법은 일본의 경비업법을 모델로 하여 제정되었으며 경비업법을 개정할 때 마다 일본의 경비업법은 참고입법으로 활용되어왔다(박병식, 1998).

3) 실제적으로 신변보호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들의 홈페이지를 분석해 보면 대다수 업체들이 “경호업무”로 표기(극소수는 신변보호업무)하고 있으며, 전국 경호·경비관련 학교의 학과명에서도 “경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경호학과”로 명명하고 있다.

<표 1> 'ST'사의 경호 분류

구 분	제 공 업 무	
개인 신변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사고 대응 • VIP 신변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변위협/자택경호 • 가이드 경호
호송/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호송 • 귀중품 호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 호송
이벤트/행사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 경기 경호 • 의전 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콘서트 경호

*자료 : <http://www.s-tec.co.kr>

<표 2> 'KT'사의 경호 분류

구 분	제 공 업 무	
신변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 개인경호 • 법원수행동행경호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아동 경호업무(학교폭력) • 스토킹 경호 업무
VIP의전/수행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인 • 연예인 • 기업 대표인사 및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인, 법조인 • 해외 VIP의전/안전업무 및 통역
행사/이벤트/스포츠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서트 및 시사회, 공연 • 예식장 • 장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람회 • 주주총회 • 모델하우스

資料 : <http://www.kotss.com>

3. 민간경호산업의 현황

2005년 6월 30일 기준 국내 민간경호업체는 2,418개에 이르며, 민간경호원 수는 117,668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호원들을 지도·감독·교육하기 위해 전국에 선임되어 있는 경비지도사는 3,104명에 이르고 있다.

<표 3> 최근 10년간 민간경호업체 및 경호원 현황

구 분	'94	'95	'96	'97	'98	'99
업 체	690	785	975	1,151	1,375	1,707
경비원	40,223	44,720	52,489	62,419	52,343	71,481
구 분	'00	'01	'02	'03	'04	'05.6.30
업 체	1,882	1,929	2,051	2,163	2,322	2,418
경비원	81,618	97,117	107,963	104,872	105,697	117,668

* 자료 : 경찰청 생활안전국 자료에 의거 편집.
 註 : 2005년 6월 30일 기준임.

<표 4> 한국 민간경호업의 현황

구 분	민간경호 기본 현황		
	기준일	2004년 12월 31일	2005년 6월 30일
경호업체	2,322개		2,418개
허가업종	2,699개		2,810개
경비원	105,697명		117,668명
선임 경비지도사	2,657명		3,104명
행정처분	253건 처분		
과태료	436건, 3억 7천만원 부과		
연간 도급액	2조 5천 138억원		
경호원 연령	평균 50.3세		
경호원 연령분포	20~30세, 60~70세 분포도가 높음		

* 자료 :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통계자료실.

III. 행사장경호 사고사례 분석

2005년 10월 3일 17시41분경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제7회 상주시 자전거축제 행사(10.1~3) 일환으로 유치한 『MBC 가요콘서트』(19:00~21:00)를 관람하기 위해 16:00부터 운집하던 군중이 녹화리허 설이 끝나야 입장할 수 있다는 방침에 따라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던 중 직3분 일부를 개방하면서 한꺼번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추정되고 있다. 피해상황은 인명피해가 159명(사망 11명, 부상 148명)으로 집계되었다.

1. 상주사고에서 나타난 문제점

사고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여덟 가지로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연·행사장 종합적 안전관리체제가 미비했다. 관할 소방서장에게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토록 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전 안전관리대책 검토가 곤란했다. 그리고 안전관리 책임기관 부재 현상을 초래했다. 둘째, 공연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 미신고이다. 공연주체가 재해대처계획을 7일 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않고 행사를 추진하였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셋째, 공연·행사장 전문 안전요원 배치기준 미비이다. 안전요원 배치기준이 없어 행사주최측이 비용을 줄이려고 임의로 아르바이트생 등 비전문 인력을 고용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했다. 넷째, 공연장 운전자 및 행사주최자 보험 가입의무 규정 부재이다. 공공시설 및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임의 규정으로 관람객 상해사고 발생 시 보상처리에 애로가 있었다. 다섯째, 공연·행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 부재이다. 자치단체, 행사주체, 유관기관, 관람객 등의 안전관리 및 행동 매

뉴얼이 전무한 실정이다. 여섯째, 다양한 연령대가 군집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이 상존하는데도 유관기관 등이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방치했다. 노약자, 학생 등이 혼재된 상태로 군집·입장함으로써 사고를 초래하였으며, 사망자 전원이 50세 이상 고령자(8명) 및 14세 이하 어린이(3명)였다. 일곱째, 대부분 이벤트성 지역축제에 안전 분야는 도외시 경향을 보였다. 민선시대 각종 이벤트성 축제가 단체장의 홍보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안전성 확보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 관계기관의 대책과 시사점

1) 소방방재청의 대책

소방방재청에서는 상주 시민운동장 안전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공연·행사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문화관광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정부측과 열린 우리당 정책위원 간의 당정회의를 거쳐, 학계와 공연계, 경호분야 등의 전문가가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경찰청, 방송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관계관 대책회의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확정했다.

주요 개선대책으로는, 첫째, 공연·행사장에 대한 재난관리 책임체제 구축을 위하여, 현 공연법상 소방서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는 공연·행사장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지역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2006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고, 지자체,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NGO,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여 관계기관의 책임을 강화토록 조례로 제정·운영하며,

둘째,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실천 방안으로는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 행동요령 매뉴얼을 2005년 10월까지 우선 개발·보급토록 하고 세부 실행 매뉴얼은 2006년 상반기까지 개발하여, 무허가 민간경비업체 단속을 강화하고 행사 전 안전요원 사전 교육 의무화 및 교육시간 확대(연간 15시간→28시간), 전문안전요원 확보 및 적절한 배치기준 마련과 경찰·소방력 사전 배치기준을 2005년 12월까지 마련하며, 그밖에 「공연법」상의 재해대처계획이나 재해예방조치 등의 용어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맞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셋째, 사후 관리 개선 방안으로는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을 관람객 3,0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법 집행에 따른 실행력 확보를 위해 신고의무 위반자에 부과하던 과태료(3백만원)를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며, 운동장 등 공공시설물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 방안을 2006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대형 공연에서 관람객, 운영요원 등의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보상을 위한 인적 상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은 향후 공청회 등 별도 논의 후 도입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재난관리체제 정비를 위한 공연법 개정과 조례 제정 등이 2006년 상반기에 가능하므로

법령 개정 전이라도 재해대처계획이 관할 소방서장에 신고되면 자치단체장 주관으로 유관기관 합동 협의회를 구성·처리토록 하는 행정지침을 10월 중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의로 우선 시행하여 공연·행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전국의 공연·행사계획 및 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지속적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위험요인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연 등의 행사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소방방재청 보도자료, 2005년 10월).

2) 경상북도의 대책

경상북도는 상주참사와 관련하여 앞으로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행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축제에 참가하여 즐길 수 있도록 『축제·행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시군에 시달했다.

도가 마련한 축제·행사장 안전관리 대책은 행사계획 수립단계부터 안전·경호·통제 등 안전요원 인력운영계획 등 안전관리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유관기관과 합동대책반을 편성하여 점검하고 행사 진행자와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대행업체를 선정 시행할 경우 계약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시·군 자체로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도 청원경찰이나 공무원으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시설물 점검에 있어서는 영구시설물은 물론 가설구조물에 대해서 건축·토목·전기·기계·가스·소방·위생 등 전 분야의 안정성을 일일이 체크하도록 했다. 아울러, 화재진압 대책과 긴급구조, 구급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소방서에서도 상황실을 운영해 행사장의 특이사항 파악 등 긴급상황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특히 행사준비, 행사진행, 행사마무리 단계별 점검사항을 정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앞으로 각종 축제·행사에서 안전관리 대책에 포함된 점검사항과 안전관리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는 물론 안전하고 편안한 가운데 도민들이 결실의 풍요로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이 추진키로 했다(경상북도 보도자료, 2005년 10월).

IV. 행사장경호 운용시스템 개선방안

1.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1) 경비업법의 개정방안

(1) 허가 및 규제의 강화

경비업법 제4조에서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여 경비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경비업의 허가기준이 강화된 듯이 보이는 하지만 실행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경비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규정된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상은 허가신청 당시에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사후 감독은 미약한 실정이다.

그리고 민간경호원들은 현장에서 시민들에 대한 경호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권한의 남용, 비윤리적 기업행위, 우발상황 발생 시 대처 불가 문제 등을 야기할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훈련의 강화, 업체의 허가요건 강화, 경비업의 등급화 등 규제의 강화가 요구된다.

민간경호원의 업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미국의 주정부 국제위원회가 민간경호업의 면허와 규제에 관한 사항을 경력과 학력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것과, 일본의 허가 갱신 제도를 두어 엄격하게 민간경호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관할경찰기관에서 법인의 경비인력·시설·장비의 확보 등에 관해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사후 점검을 강화하고 허가과 규제에 관한 사항을 선진국 민간경호업의 규제 수준으로 강화 할 필요성이 있다(박주현, 2001). 그리고 경비업체 실무자 면담의 내용에서도 강조 하였던 허가기준에 있어서도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등의 강화를 통해 허가가 취소된 업체의 임원은 다시는 경비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다만, 규제의 강화는 곧 민간경호의 의욕 저하 및 불만의 표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방침’과 ‘현실’사이의 정책적인 접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민간경호 교육의 개선

2006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은 일반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한 때에는 일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근무 배치 후 1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28시간 이상의 신입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특수경비원의 경우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채용한 때에는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근무 배치 전에 88시간 이상의 특수경비원신입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속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은, 일반경비원에 대하여는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 5> 민간경비원의 법적 교육 이수 시간

구 분	신입교육		직무교육	
	시 한	시 간		
일반경비원	①	배치 후 1월 경과 전	28시간이상	4시간 이상/월
	②	배치 전		
	③	배치 전		
특수경비원		배치 전	88시간 이상	6시간 이상/월

*基準 : 2005년 12월 2일 '경찰청공고제2005-19호'에 의하여 경비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된 내용(시행일 : 2006년 2월 5일)

註1 : ①은 일반적 배치장소의 경우

註2 : ②는 시설경비업무 중 배치경비원과 제3자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배치장소로서,

1.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사장
2. 노사분규가 진행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3. 재개발·재건축관련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4. 특정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민원이 있는 장소
5. 주주총회관련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6.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註3 : ③은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교육에 관한 주요 개선대책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낮은 수준의 법적 교육 시간의 개선이 요구된다. 다만 최근 법 개정으로 신입교육시간이 28시간으로 증가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분화되지 않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선이 요구된다. 경비업법상 교육의 내용은 민간경비업무의 영역은 다섯 가지 업무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에는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의 인력경비 교육프로그램으로만 구성되어있어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셋째, 보수교육 없는 경비지도사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이 요구된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자로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교육의 이수 후 경비원을 지도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경비원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직무·보수교육을 시행하도록 경비업법 규정을 개정하여 경비원에게 신지식의 전달은 물론 원활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전문교육기관의 역량 강화 및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전문교육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와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다만 최근 경찰청에서 추진된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시책⁴⁾에 앞으로도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경비업계에

서도 적극 협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형식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교육의 시행에 있어서는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고, 그 외에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보수교육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3) 행사장경호관련 법규정의 보완 및 강화

현행 경비업법 상 행사장경호와 관련된 규정은, 경비업법 제18조⁵⁾(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경비업법시행령 제30조⁶⁾(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와 경비업법시행규칙 제24조⁷⁾(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이다.

경비업법 제18조에서 1항에서는 “경비업자는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제2항에서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경비업무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곳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제3호의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8.4>”고 규정하였다. 제3항에서는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5.8.4>” 고 규정하고 있다.

경비업법시행령 제30조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은 행사장 그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사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의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것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개최 24시간 전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행사주최자가 행사장경호에 경호원을 투입하게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경비업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서는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경비원 배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배치지의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경비업무 중 다음 각호의 장소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

4) 최근(2005년 9월 12일, 경찰청공고 2005-28호) 민간경비 교육기관의 육성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교육기관 신규지정 신청을 접수 받아 전국 66개소에 민간경비교육기관을 육성하고자하는 시책을 시행하고자 공고하였다.

5) 개정 기준일 : 2005년 8월 4일 개정 및 신설, 2006년 2월 5일 시행되는 내용 기준

6) 개정 기준일 : 2004년 3월 17일 개정된 내용 기준

7) 개정 기준일 : 2006년 2월 5일 시행

8) 1.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사장, 2. 노사분규가 진행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3. 재개발·재건축관련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4. 특정 시설물

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과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장경호와 관련하여 배치신고의 내용(신고에 관한 기한과 장소적 범위), 지방경찰청장이 행사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게 하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행사장 경호에 관한 법개정시 행사장경호에 동원되는 인력, 장비, 물자, 운영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인 경호계획서를 시큐리티 컨설턴트(시큐리티기획사)가 작성토록 하며, 경호계획서를 지참하고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행사전 1회 이상 공경호지원 및 협조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관회의를 여는 등의 내용이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2) 관련법령의 개정방안

현재 민간경호관련 법령별로 개정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행사장경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연법과 소방관계법에 대한 개선대책,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관광부의 개선대책에 대해 현재 시행계획 중인 소방방재청의 자료⁹⁾에 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재난관리 책임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규모 공연·행사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명확히 하고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문화관광부)하고, 공연법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는 공연·행사 재해대처계획을 지역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한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NGO,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공연·행사 안전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대책을 협의·결정토록 개선하는 조례 신규 제정하기로 했다.

세부 개선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를 개정할 계획인데 그것은 “재해대처계획 신고(행사주체) → 신고서 접수(시·군·구)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대책 검토(관할 경찰, 소방서 등 심의위원회) → 계획 보완·지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기타 공연법상의 용어 정비를 계획 하고 있는 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용어 정의에 맞추어 개선¹⁰⁾하기로 했다.

경찰청에서는 행사장 안전요원의 전문성 확보 및 배치기준 마련할 계획인데 무허가 민간경비업체 단속 강화 및 행사시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사전교육 의무화하고 교육시간을 28시간으로 확대할 것이며, 동시에 행사주최측이 자체 경비 능력을 제고토록 하여 관람객 안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사대비 사전대응계획 수립 및 경찰·소방력 배치기준 설정하고자 경찰·소방력을 사전에 적정 배치할 수 있도록 경찰·소방력 배치기준을 지침으로 마련·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직할 소방파출소 구급차량 보강을 위해 2005년 11월 수립계획인 제3차 구조·구급능력 확충 5개년 계획에 포함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설치와 관련한 민원이 있는 장소, 5. 주주총회관련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6.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9) 소방방재청,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2005.10.19.

10) □□재해대처계획→안전관리계획□□, □□재해예방조치→재난예방조치□□ 등

문화관광부 소관 사후 관리 개선대책으로는 공연법상의 재해대처계획 신고기준 및 벌칙 강화할 계획인데 그것은 관람객 3,000명 이상이던 신고대상을 1,000명 이상으로 신고대상의 기준을 강화하고 재해대처계획에 민간경비요원 등 안전관리인력 배치계획을 포함할 것이다. 그리고 미신고 벌칙을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관광부에서는 사고발생에 대비 관람객 등에 대한 효율적 배상방안 마련하고자, 운동장 등 공공시설물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하고, 대형 공연에서 관람객, 운영요원 등의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보상을 위한 인적 상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을 도입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2. 정책적 개선방안

1) '시큐리티기획사'제도의 도입과 경비지도사제도의 강화

대규모 행사장 경호에서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경호계획을 기획하는 시큐리티 컨설턴트의 역할은 실로 지대하며, 미국의 경우에도 시큐리티의 영역 중 경비자문업(시큐리티 컨설팅)이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비업법에 의거 경호에 관한 도급계약시 의뢰인들은 시큐리티 컨설팅에 관한 비용은 당연히 없는 것으로 알거나, 업체에서 제안을 하더라도 비용발생을 극히 꺼리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경호업체에서도 경호계획시 시큐리티 컨설턴트에 의한 전문적 기법을 적용시키기 어렵고, 경호계획서에 소홀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경호행사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격제도는 법적 보장체제로서 전문성을 정부가 인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격제도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특정업무의 질적 수준 향상, 인적자원의 자격요건 유지, 소비자의 신뢰확보, 그리고 사회적 인식제고 등이 있다(김덕기, 2001).

한국에서 공인된 국가자격은 '경비지도사'자격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며, 본 연구에서는 경호운영에 있어 전문가에 의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호계획수립을 위한 가칭 '시큐리티기획사(Security Consultant)'제도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시큐리티기획사'모델의 첫 시도로 '컨벤션기획사'와 '경비지도사'의 장점들을 사용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제안한다.

<표 6> '시큐리티기획사' 1급, 2급 자격시험 내용(안)

구분		'시큐리티기획사' 자격시험에 관한 내용	
수행 직무		• 경호업무의 기획·준비·진행 등 제반업무를 조정·운영하면서, 경호의 목표 설정, 예산 관리, 등록기획, 계약, 협상, 현장관리, 회의 평가의 직무수행을 담당	
결격 사유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취득 방법	1급 응시 자격	1. '시큐리티기획사' 2급 취득후 동일직무분야 실무경력 4년이상 실무종사자 2. 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동일직무분야 실무경력 7년이상 실무종사자 3. 전문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동일직무분야 실무경력 9년이상 실무종사자 4. 관계기관에서 실무경력 11년 이상 종사자 5.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취득자	
	2급 응시 자격	1. 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졸업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종사자 3.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시험 과목	필기 I (시큐리티)	• 경비업법, 민간경비론, 법학개론, 경호학, 소방학, 기계경비론, 범죄학
		필기 II(기획)	• 시큐리티기획실무론, 재무회계론, 시큐리티마케팅
	실기	• 시큐리티 실무(시큐리티기획 및 실무제안서 작성, 영어프리젠테이션)	
합격 기준	필기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	
	실기	60점이상	
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		
기타	1. 경찰청장은 '시큐리티기획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새로이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규정에 의한 '시큐리티기획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경찰청장은 '시큐리티기획사' 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경비업무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비고	註1 : 관계기관은 대통령경호실, 경찰청, 소방방재청, 소방안전협회, 경비협회 註2 : 관련학과는 경호학과, 경찰행정학과		

한편, 경비수요의 증가와 이에 따른 경비원들의 자질향상을 전제로 이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교육을 담당할 관리자 자격으로 탄생한 것이 경비지도사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5년 경비업법의 5차 개정으로 신설되어 1997년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경비업자는 규정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직무¹¹⁾를 성실

11) 첫째,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둘째,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셋째,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넷째,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기계경비지도사), 다섯째, 오정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기계경비지도사)이다.

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의 '경비지도사'제도는 형식적으로 일정 수준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것은 응시자의 자격기준(연령 등), 시험과목 조정의 필요성, 시험 난이도의 문제점, 경비지도사 합격자에 대한 교육과목에 관한 조정(이론과 실무), 경비지도사 업무매뉴얼 부재, 경비지도사의 직무·보수교육 등 재교육 부재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로서는 경비업계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경비지도사가 시험에 합격하여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격증'소지자로서만 만족해야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 문제는 경비인력의 자질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결함은 곧 경비인력의 질적 수준과도 연관되는 것이다(이윤근, 2001).

그러므로 경비지도사제도의 강화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고, 한편으로는 경비지도사들이 현장에서 경비원들을 원활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관계기관의 기능 확대와 상호협력체제 구축

민간경호 주요 관계기관은 경찰청, 한국경비협회,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소방방재청이다. 민간경호업무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상호 협력하고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

한국경비협회는 경비진단 등과 같은 주요업무들을 충실히 해 민간경호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에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예방·수습·복구에 관한 각종 기법의 개발 및 보급, 재난대비 물자·자원·장비의 파악 및 동원계획의 수립·운영, 재난 표준대응방법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한국경비지도사협회에서는 경호원을 직접 지도·감독·교육하는 경비지도사의 육성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해 나가야 한다.

민간경호업무의 직접적 제어기관인 경찰청에서는 급성장하고 있는 민간경호업무에 비례하여 본청 및 지방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부서 직원의 증원은 물론 부서의 역할분담을 철저히 하여, 민간경호업체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사안에 따른 체계적인 표준 매뉴얼을 확보하여 제공하는 등 경비업의 지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과 민간경호의 협력적 문제는 필수적 사안임에도 협력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한 이유는 양조직간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 방법기관업무의 거부, 방법관련 정보의 차단, 관련법규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선진국에서 경찰과 민간경호가 상호협력프로그램을 통해서 치안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이라는 목표 하에 적극적 상호협력프로그램의 정립이 요구된다.

3) 수익성행사 등의 경호업무 민영화

민영화(privatization)는 정부가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없는 영역을 민간에게 맡김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선진국에서는 월드컵과 같은 수익성행사의 진행은 경찰과 함께 민간경호가 적극적으로 안전관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행사진행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수익성행사에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공경호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 경호로의 민영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급격한 범죄의 증가로 인해 경찰력만으로는 사회가 요청하는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무리가 있으므로 범죄예방에 있어 경찰과 민간경호가 함께 공조하고 중복된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는 521명으로 선진외국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경찰 인력¹²⁾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사회생활을 위한 범죄예방과 순찰활동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수사, 단속, 검거활동, 재해와 사고 대처활동, 혼잡·시위 경비활동,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기초질서 확립 및 유해환경정화활동,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및 교통사고조사활동, 사회불안 요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국가안보강화활동, 국제적 수사공조활동 등의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이황우, 1998). 부족한 경찰인력과 예산으로 담당해야 할 업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수익성행사와 같은 업무는 수익적 측면에서나, 경찰 운영적 측면에서 민간경호로의 이양이 필수적이다.

4) 민간경호에 대한 의식의 제고

민간경호에 대한 의식의 제고에 관한 문제는 크게 시민의 민간경호에 대한 의식문제, 공경호기관의 민간경호에 대한 의식문제, 민간경호업체 및 경호원 자체의 의식문제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경호를 물리적이고 외형적인 것에 치우치게 생각하고 있으며, 물리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경호원을 요구하지만 경호활동 중 경호원이 행사할 수 있는 물리적인 행위는 아주 제한적이다. 또한 경호가 일반인들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주로 공경호에 관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경호에 대한 또 다른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공경호와 민간경호는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으므로 각각의 활동에 맞는 경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므로 무조건 공경호에 관한 자료를 인용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정태황, 2001).

이러한 경호 전반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경호활동에 대한 고객의 신뢰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경호를 수행하는 경호원, 경호업자 또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고객 신뢰가 선행될 때 비로소 경호대상자는 경호원에게 자신의 신체를 맡길 수 있으며 동시에 원활한 경호대

12) 경찰 인력은 2004년 말 현재 총 145,492명으로 이중 경찰관이 93,271명(64.1%), 전의경이 48,290명(33.2%), 일반직 등이 3,931명(2.7%)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자 고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신뢰회복은 중장기적으로 경호업무 자체는 물론 경호원, 민간경호업체의 신뢰로 이어져 민간경호산업의 발전을 앞당기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김태민, 2005a). 그리고 민간경호업체 스스로가 지나친 영리성을 추구할 경우 범죄예방이라는 경호서비스 본질이 약화될 것이고, 또한 기업 간의 생산·판매경쟁이 도를 지나쳐서 행해지는 과당경쟁체제로 경호산업이 진전되면, 그 결과는 경호서비스 자체의 질 저하라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경호업자 및 경호원들은 범죄예방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일임을 담당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시민봉사정신을 필두로 한 고객서비스 지향이라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5) 시큐리티 박람회 및 세미나 확대

국내의 200여개 보안장비 전문 제조업체가 참가하고, 아시아 토털보안 시장을 선도하는 국제보안 전문전시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SecurityWorld Expo(국제정보보호 및 보안기기전)”에서는 CCTV, 출입통제, 빌딩관리, 산업보안 등에 이르는 각 분야별 핵심 전문업체가 참가하는 토털보안 전문전시회로 매년 200여 업체가 참가하여, 최신보안 장비와 기술을 선보이는 국내최고의 보안기술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각 기업체 보안관리자와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주제를 선정한 각종 보안장비 관련 기술 세미나와 신제품 발표회가 병행해서 개최된다. 박람회를 통해 기업 및 학계에서는 선진기술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을 습득함은 물론, 본 박람회를 통해 기업홍보에도 많은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며, 대국민 인지도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큐리티산업을 총괄하는 각종 박람회를 확대하고, 관련기업·기관·학회 등의 많은 참여와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운용적 개선방안

1) 전문 시큐리티 기법의 적용

행시장의 경호운용에 있어서 시큐리티 컨설턴트의 전문적 기획능력과 시큐리티 시스템의 최적설계가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시큐리티 컨설턴트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큐리티 컨설팅 기법, CPTED 기법, 시스템 통합 기법, 경호운용 기법 등의 전문 시큐리티 기법들을 적용시킨 설계서 즉 경호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서를 작성해야하고, 그에 따른 시큐리티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용함으로써 효율적 경호임무를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 시큐리티 컨설팅 기법으로는 프리즘(PRISM : Proactive Resources for Integrated Security Management) 방법론을 들 수 있다. PRISM방법론은 시스템 공학적인 시큐리티 설계 모델로서 대처방안 개발과 하나의 통합보안 시스템을 위한 기초가 되며, 위험한 사건들을 예상하고 상호 보완적인 시큐리티 대처방안(예방전략·탐지전략·통제전략·개입전략)을 통합함으로써 위

핵요소를 감소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CPTED 기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주요 전략은 크게 자연적인 접근통제, 자연적인 감시, 영역성의 강화로 제시할 수가 있다(남궁구, 1997). 접근통제와 감시는 상호 배타적인 감시가 아니라 상호 지원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접근통제는 범죄기회를 줄일 목적의 설계 개념이며, 이러한 접근통제전략의 주요요점은 범행목표물예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고 범죄자에게 체포의 위협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감시는 침입자를 계속 관찰 하에 둘 목적의 설계개념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의 증가된 감시능력은 잠재적 범죄자들이 인식한 체포의 위협성을 증가시켜 범죄억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시전략은 전형적으로 조직적인 감시, 기계적인 감시, 그리고 자연적인 감시로 구분할 수 있다(Timothy D. Crowe, 1991). 시큐리티 컨설턴트는 이러한 CPTED 기법의 전략을 환경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여 기업의 측면에서는 비용의 최소화를 경호운용적 측면에서는 경호인력의 규모와 운용을 효율적으로 피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시스템 통합은 시큐리티의 주체인 인적 요소, 즉, 경호원과 기계적 요소의 통합을 통한 기법이다. 시큐리티 컨설턴트는 시스템통합을 통해 인력의 최소화는 물론 경호인력 자체적(신체의 생리적 문제 등)인 잠재위협도 예방할 수 있으며,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위협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적 요소로는 신변보호 및 호위활동, 호송경비활동(여기에서는 무장차량의 이용도 포함된다), 시설경비활동 등이고, 기계적 요소로는 방범경보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CCTV시스템 및 DVR, 침입감시시스템, 순찰관리시스템, 주차관리시스템, 전자보안 장비(EAS시스템, 금속 및 폭발물 탐지 장비, 검색 장비 등), 방재시스템 등 경호운용에 관련된 시스템이다.

경호의 특성상 위태상황은 예정되어 있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그 규모를 파악하기도 힘들다. 이러한 경호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방법적인 요소가 바로 고도로 훈련된 경호전문가의 몸을 수단으로 한 경호기법인 것이다. 경호의 원리와 기법에는 일반원칙과 특별원칙, 자연방벽효과와 원리, 주의력효과와 대응효과와 원리, 근접경호기법, 우발상황 발생 시 SCE원칙, 축소거리의 원리, 체위확장의 원리 등 많은 경호기법들이 있다(이상철, 1997). 경호계획을 수립하는 시큐리티 컨설턴트는 계획수립 시 경호원들에게 이러한 여러 기법들을 적용한 경호임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이고 철저한 기획을 해야 할 것이다.

2) 공경호와 자원봉사자의 지원시스템 수립

민간경호업무 수행에 있어 업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공경호와의 상호협력 외에 자원봉사조직 및 시민봉사 조직의 적극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실질적으로 대규모 행사장 등의 경호운용시 민간경호업체는 관할경찰서에 지원협조를 의뢰하게 되는데, 일선경찰서의 경우 민간경호업무의 직접적인 지원 등에 관한 담당부서는 '생활안전과의 생활안전계'와 '경비과의 경비계'이다. 지방경찰청의 관계부서는 '생활안전부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와 '경비부 경비1과 경비계'이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자원복지봉사에 정부는 물론, 기업, 시민단체, 학교, 각종 지역사회 주민조직들이 연대하여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자원복지봉사활동 영역 역시 사회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환경, 재난, 교통, 범죄, 소비자문제, 의료, 정치, 인권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 자원봉사활동은 2005년 8월 4일 법률 7669호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되어 제도화되었다.

현대의 대형 스포츠경기나 행사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2002 한·일 월드컵축구대회의 자원봉사자는 전국적으로 16,196명을 선발되어 활약하였다. 자원봉사자의 업무 분야는 16개 업무로 구분되어 운영되었다.

안전자원봉사자들의 주된 업무는 경기장 안내와 안전에 관한 업무이다. 안전자원봉사자들의 우선적 임무는 관객에게 정확한 경기장 안내를 담당하는 것이다. 축구장의 경우 관중석은 구조상 크게 4개의 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어느 한 쪽으로 입장하게 되면 다른 쪽 구역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으면 군중들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정복차림의 경찰이 경기장 곳곳에 배치되어 있으면 군중이나 선수가 느끼는 중압감이 증폭될 것이며, 이러한 점의 보완책으로 안전자원봉사자들이 경기장의 안전 임무를 맡게 된다. 그러므로 안전자원봉사자들은 관중들이나 선수들에게 여러 가지 안내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갖가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활동 및 긴급조치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김성태·김계원, 2004).

3) 표준 '경호업무매뉴얼' 마련

한국 민간경호업무의 운용시스템을 체계화함은 물론 2,300여개 민간경호업체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은 표준 '경호업무매뉴얼'의 마련이다.

최근 발생한 상주사고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중 민간경호업체에서 최우선적으로 반성해야 할 대목은 행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 부재였던 것이다. 만약 해당 민간경호업체에서 체계화된 업무 매뉴얼을 보유하고, 매뉴얼에 입각해 경호업무를 수행했다라면 이러한 사고는 사전 예방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경호업무매뉴얼은 경호 업무 방법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행동 지침서이다. 경호업무매뉴얼은 경호 업무 수행의 표준화, 전문화와 업무 품질도 향상을 위해 관리의 중점사항을 설정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항까지 기술하고 표현하여 신입사원은 물론 경력사원까지 숙지하여 해당 경호업무의 품질도 향상은 물론 경호업무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침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호업무매뉴얼의 구성 예시로 경호업무의 성격에 따른 분류상 '행사장 경호' 부문의 업무매뉴얼 구성 내용을 다음의 표와 같이 제안한다.

이러한 구상 외에 표준 경호업무매뉴얼을 구성하는 방법은 각 회사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위기관리대응단계에 의한 제시방법으로써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

구단계 등으로도 구분하여 경호업무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 행사장 경호업무매뉴얼의 구성내용(안)

구 분	구 성 내 용	
경호의 성격 규정	행사의 성격에 따라 모든 전략의 변화가 생성	
경호 환경 분석	당해 행사의 특성, 참석 인원 및 규모	
위해평가 내용	위협 요인 분석(항목별 세부적 제시)	
경호의 목표설정	경호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경호팀 운용체계 규정	경호팀	지휘체계, 경호팀 규모, 조직의 편성
	협력기관	경찰, 소방, 시설, 시민단체 등의 지원체계
경호계획의 내용	행사 개요	
	업무의 범위	
	전반적 운영 계획	
	정보보안 대책(정보수집 내용 및 보안의 방법)	
	동선 계획(경호대상자, 경호원, 시민, 관계기관별)	
	출입통제 대책(시차입장계획, 주차계획)	
	비표운용 계획(AD카드 운용 등)	
업무수행 방법론	물자 계획(호신, 통신, 감시, 검색, 탐지, 보안, 통제장치)	
	임무 수행 절차(시간에 따른 업무 수행 계획 : 행사전, 진행중, 행사후)	
	팀별 업무 분담 내용	
	팀별 임무 수행 방법	
	POST별 임무 수행 방법	
	개인별 임무(근무 시간, 교대방법)	
개별적 교육 내용	유형별 비상대처 방법	
	경호 의전 방법	
	당해 행사와 관련된 사건·사고 사례 분석	
	장비운용 및 사용방법과 지침	

4) 사용 장비의 현대화·첨단화

현재까지는 경호장비나 설비에 대한 관리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사양·강도·규격·성능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비로 인한 경호원 자신 또는 시민에 대한 피해는 잠재적으로 상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도한 성능을 가진 장비들의 제한 등 규격과 성능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적·경봉·분사기 이외에 통신장비, 검색장비, 순찰장비, 방법장비, 보호장비(방탄복, 방검복 등) 등 현대화된 장비 확보를 위한 재정적, 법규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경호업자 측면에서는 고도로 지능화·홍포화·침단화 되어가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침단장비들을 개발하여 경호원에게 구비·보강하게 해야 하고,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의 장비들로 교체를 하는 등 장구·장비의 현대화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설주의 측면에서도 예방적 차원에서 침단 출입통제시스템, 검색 및 탐색장비, DVR장비, 방법 및 방재자동설비장치 등 과학적인 시설 확충에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5) 산·학·관이 참여하는 경호협의체 구성

경호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학·관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경호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통상 산학협력, 산학연협력, 민관협력, 민관군협력 등이 거론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민간경호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민간경호업체가 중심이 되어, 학계의 연구·개발, 기관의 협력·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호관계적 측면에서 산·학·관 경호협의체라 한다.

이러한 산·학·관 경호협의체의 주요 직무는 경호업의 발전을 위한 경비업법 등의 법개정 관련 활동, 시큐리티 관련 정책의 제안, 경호 발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선진 경호 기술의 도입과 보급, 신지식·경호 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경호의 인식향상 및 홍보를 위한 각종 강습회 및 교육활동, 범죄예방프로그램개발·보급,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경호 업무에 관하여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사업, 시큐리티 컨설팅 지원(경호경비 자문), 경호원의 품의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연구 등의 활동을 담당해야 한다.

산·학·관 경호협의체의 구성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제안한다.

<표 8> 산·학·관 경호협의체 구성원(안)

구분	산·학·관 경호협의체 구성원(안)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민간경호업체 실무자(경영주, 관리책임자, 시큐리티 컨설턴트) • 한국경비협회 관계자 • 한국경비지도사협회 관계자
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경호경비학회와 같은 경호관련 학회 • 소방·방재관련 학회 • 경호학을 전공한 박사 및 연구원 • 대학의 경호·경찰·소방·방재 관련학과 교수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민간경호 담당 실무자 • 소방방재청 담당 실무자 • 대통령경호실·국정원·군과 같은 공경호 관계기관 담당 실무자 • 관련 연구원

이러한 산·학·관 경호협의체는 협의체에서 주관하는 경호기획콘테스트(Security Consulting Contest) 등을 개최하여 산·학·관이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왕성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행사장은 다중이 운집되어 있는 특수한 경호대상지역으로서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총체적이고 통합적 경호 운용시스템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생한 상주'가요콘서트'행사장사고는 민간경호업체의 전문성은 물론 종합적 안전관리체제의 미비, 전문 안전요원 배치기준 미비,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 부재, 안전조치 부재 등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각종 행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행사에 참가하여 즐길 수 있도록 행사장경호에 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었고, 산재되어 있는 국내 행사장경호에 관한 법적·제도적, 정책적, 운용적인 부문별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었으며, 본 연구를 수행하기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택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적의 행사장경호 운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정책적 개선방안, 운용적 개선방안이라는 세 가지 범주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경비업법의 개정 사안, 공연법 등 행사장 경호와 관련된 관련법령의 개정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책적 개선방안으로는 '시큐리티기획사'제도의 도입과 '경비지도사'제도의 강화, 관계기관의 기능 확대와 상호협력체계 구축, 수익성행사의 민영화, 민간경호에 대한 의식의 제고, 시큐리티 박람회 및 세미나의 확대에 대해 논의하였다. 운용적 개선방안으로는 시큐리티컨설팅 기법, CPTED 기법의 적용, 시스템 통합 기법, 경호운용 기법 등의 전문 시큐리티 기법의 적용, 공경호와 자원봉사자의 지원시스템 마련, 표준 '경호업무매뉴얼'마련, 장비의 현대화·첨단화, 산·학·관이 참여하는 경호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언하는 바는 경비업법의 개정사안을 검토, 지정좌석제, 수준에 따른 행사장 인력배치기준의 설정 등 행사장 경호와 관련된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큐리티기획사(Security Consultant)'국가 자격제도를 제안하며, 경비지도사제도를 변동하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민간경호업무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주요 관계기관인 경찰청, 한국경비협회,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소방방재청 등이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수익성행사의 안전은 민간경호로 대폭 이양을 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경호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켜야 하고, 민간경호업무 수행에 있어 업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공경호와의 상호협력 외에 자원봉사조직 및 시민봉사 조직의 적극적인 지원시스템 마련해야 한다.

또한 표준 '경호업무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고, 산·학·관이 참여하는 경호협의체가 생성되어, 경호기획콘테스트(Security Consulting Contest) 등을 개최하여 산·학·관이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왕성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이황우(1998). 『경찰행정학』. 서울:법문사.
- 정태황(2001). 『경호이론 및 실무』. 서울:글핌.
- 허미화(역)(1997). 『질적 사례 연구법』. Merriam, Sharan B. 서울:양서원.
- 김덕기(2001). “관광산업인력 전문화 방안”. 한국관광연구원.
- 김성태·김계원(2004). “2002 한일 월드컵 주요구역 경비실무 사례연구”. 『경호경비연구』, 제7호. 한국경호경비학회.
- 김태민(2005a). “민간경호산업의 현안 과제와 발전방안”. 『산업기술연구논문지』, 제8권 제1호. 경운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 김태민(2005b). “한국 민간경호업무 운용시스템 모델 설정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남궁구(1997).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전략으로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6호. 한국공안행정학회.
- 박병식(1998). “機械警備業 관련 입법의 必要성과 試案”. 『용인대학교 논문집』, 제15집.
- 박주현(2001). “공안행정의 민간부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민간경비 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철(1997). “경호기법에 입각한 경호무도 지도방법에 대한 고찰”.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지』, 제8집 제1호.
- 이윤근(2001). “다수시민참여 대규모행사시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대책 워크샵.
- 이윤근(2001).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3호. 한국경찰학회.
- 이윤근(2004). “범죄예방을 위한 공경비 섹터의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3호. 한국민간경비학회.
- 경상북도(2005). 보도자료(“축제 행사장 안전관리대책 마련·시달”). 2005년 10월 12일자.
- 경상북도(2005). 축제·행사장 안전관리 대책.
- 경찰청(2003). 『경찰백서』.
- 소방방재청(2005). 보도자료(“정부차원의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확정”). 2005년 10월 19일자.
- Crowe, Timothy D.(1991).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Application of architectural design and space management concepts*. Boston: Butterworth-Heinemann.

ABSTRACT

The Study on the Measure to Improve the Event Place Guarding Operation System

Lee, Sang Chul

Kim, Tae Min

A highly sophisticated expertise and systematic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security operation are essential for a crowded stadium, a special object of security guarding. Nonetheless, the recent incident in a singing concert hall reveals the overall problem like the lacking safety management system, lacking deployment of professional security personnel, absence of safety manuals and safety measures, as well as the lack of professionalism of private sector security companies.

In this study, we presented three categories that needed improvement, lik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mprovement of policy and improvement of operation which are required to set up the model to operate the optimal private sector security duties.

For the revision of law and institution for a better and more desirable method, we discussed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pursuant to the security operation at places where events are held, including the revision of law on security guarding work, regulation on common housing management, uniformity of security guarding, and law on performance.

For the improvement of policies, we discussed the introduction of security consultants, strengthening the security instructor system, expansion of relevant organizations, establishment of mutual cooperation, privatization of profitable events, improvement of awareness about the security activities provided by private sector, policy for the professionalism of private security operation, expansion of security exhibition and seminar. For the improvement of operation, we discussed professional security techniques. such as the technique of security consulting, the application of CPTED technique, the technique for the integration of system, the method of 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to support public security operations and volunteers, establishment of a manual for security guarding performance, modernization and high tech-oriented equipment, organization of security guarding entity in which the industry, academic society and government participates together.

[Key Words : security, private sector security, event place guard, private sector security industry, private sector security companies, operation system]